

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

- 별표 -

2020. 12.

[별표1] 평가표

□ 해외 건축 활동 지원 평가표(안)

<평가항목 및 평가지표, 배점>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훈련자 역량 (40)	기본 역량	훈련자는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(포트폴리오 등)	20
	발전가능성	훈련자는 팀 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가?	20
프로 그램 우수성 (30)	프로그램의 질	(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) 설계규모, 건축물 가치·중요도 (건축 국제교류 지원) 행사규모, 주최기관 신뢰성, 내용 적정성	20
	훈련효과	본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자의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?	10
활동 계획 (30)	활동계획 총실성, 실현가능성	활동계획의 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(초청장, 계약서 등 추진계획 증빙 여부, 기간, 장소 등 확정 여부 등)	20
	예산집행 적절성	예산집행계획의 현실성, 구체성	10
합 계			100

- 1)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며,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→ 최종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
- 2)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가 선발 규모를 초과한 경우,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.

[별표2] 비용 지원 세부기준

□ 해외 건축 활동 지원

○ 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

<항목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>

지급항목	지급기준	지급방법
왕복항공료	5,000천원 이내	실비지급
훈련비	1,500천원 / 월 / 6,000천원 이내	정액지급

- 1) 팀별 20,000천원 이내에서 실비 및 정액 지원(1인당 8,000천원 이내)
- 2) 팀 구성원 중 훈련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
- 3) 출국 및 귀국 항공노선은 해당 훈련지역 최단경로로 예약하여야 한다.
- 4) 항공료 정산시 항공여정안내문, 영수증, 예약확인증, 항공운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- 6) 훈련비는 매2달마다 지급하며 지급일은 25일로 한다. 단,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.

○ 건축 국제교류 지원

<항목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>

지급항목	지급기준	지급방법
왕복항공료	5,000천원 이내	실비지급
행사운영비(행사홍보비, 장소 대관료, 장비 임차료, 물류비, 참가비, 재료비, 통·번역비 등)	15,000천원 이내	실비지급

- 1) 팀별 20,000천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
- 2) 왕복항공료는 팀 구성원 중 훈련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
- 3) 행사운영비는 팀 내 훈련자 참여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(집행액 기준)
(50% 이상 : 100%, 49%~25% : 80% 지원, 25% 미만 : 50%)
- 4) 왕복항공료에 대하여는 "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"의 3)~5)을 적용한다.
- 5) 행사운영비는 반드시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, 사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.
- 6) 왕복항공료는 전체 지원한도(팀별 20,000천원)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